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 1 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중소기업 승계에 대한 특례 마련 등〉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79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5
1. 총괄검토	5
가. 제정안의 개관	5
나. 제정안의 발의배경 및 입법필요성 검토	9
2. 조문별 검토	15
가. 제정안의 목적 및 정의규정 등	15
나. 중소기업의 승계 활성화 지원 등	24
다. 중소기업의 승계에 대한 특례	33
라. 기업승계 중개업자의 등록·관리 등	59
마. 벌칙 및 지원센터 경과조치 등	62
※ 참고자료	6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원이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10
3. 회부연월일 : 2025. 12.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제조업 사업체 수 총 71,727개 중 중소기업은 69,807개로 전체의 97.3%를 차지함. 종사자 수 역시 중소기업체 199만 명(69%)으로 대기업 89만 명(31%) 대비 2배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음(2023년 통계청 자료). 이렇듯 중소제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은 대다수 국민이 종사하는 일터이며 우리 경제의 근간임.

한편,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도 가속화돼 상당수 기업이 후계자 부재로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의 ‘2024년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의 60세 이상 CEO 비중은 2012년 14.1%에서 2023년 36.8%로 급증했음. 즉 중소제조기업 CEO의 3분의 1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나타남.

이에 고령 경영자의 은퇴 후 중소기업 승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폐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현장에서는 중소기업 승계제도가 여전히 가족 간 상속과 증여 중심이라는 비판도 나옴. 일본의 사례처럼 종업원 승계 또는 인수·합병 방식의 승계를 포함하는 통합적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앞서 ‘2024년 중소기업 실태조사’에서도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별도 법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87.7%, ‘제3자 승계 및 M&A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은 64.5%로 나타났음. 중소기업 승계 관련 특별법 마련과 지원체계 구축 요구가 높은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의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기업승계 촉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화 시대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제고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정 취지 및 책무(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이 법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 심화로 기업승계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기업승계, 기업승계자, 경영자 등에 대한 정의와 기업승계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승계자의 책무를 부여함.

나. 중소기업의 승계 활성화 지원 등(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중소기업 승계촉진 정책을 종합·조정하여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승계 정보제공, 경영·기술, 판로지원 등의 승계 활성화 및 성장지원, 기업승계촉진계정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 기업승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기업승계지원센터 지정 및 역할 부여 방안과 이에 대한 성과관리로 개선방안 도출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다. 중소기업의 승계에 대한 특례(안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승계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제지원, 신속·간편한 승계절차 지원을 위해 「상법」에 따른 각종 합병절차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합병, 영업양수, 채권자보호절차, 주식 매수 청구권, 주주총회 소집통지 등에 대하여 공고 및 송달기간 단축, 이사회 결의 준용, 주식매수 기간 연장 등의 특례 부여와 합병절차 등에 있어 기간 단축, 부동산 등기신청, 고용보험료율 등의 특례 사항을 규정함.

라. 기업승계 중개업자의 등록·관리(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중개업자 난립 방지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등록해야 하며, 공정·성실 중개, 손해배상, 보증보험 가입 등 기업승계 중개업자의 의무 사항과 의무 사항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승계자에 대하여 중개 절차상 발생하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

마. 권한 등의 위임·위탁과 벌칙 및 과태료(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지방중소기업청 및 시·도지사에게 대한 권한 위임,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권한 위탁 사항과 비밀 준수 및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을 강제하기 위한 비밀누설 및 뇌물죄 등의 적용 시 공무원의제 사항과 과태료, 중개업자의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함.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제정안의 개관

제정안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 심화 상황에서 후계자 부재, 자녀승계 곤란 등으로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시대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제고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에 필요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며,

기업승계자, 경영자 등에 대한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지원, 기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소규모 합병, 영업양수도, 채권자보호 절차, 주식매수청구권 등 「상법」에 따른 절차에 관한 특례 및 기업승계 중개업자의 등록·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제정안은 총 5장 31개의 조문 및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 총칙은 목적, 정의, 국가 등의 책무,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2장은 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기업승계 자금지원

및 기업승계촉진제정의 설치, 기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며,

제3장은 소규모합병·영업양수·합병절차·채권자보호절차·주식매수청구권·소집의 통지 등 「상법」에 따른 일반규정에 대한 특례 및 고용보험료율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

제4장은 기업승계 중개업의 등록과 비용보조, 기업승계 중개업자의 의무와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장 보칙은 청문, 권한 등의 위임·위탁, 과태료 및 벌칙 등에 대하여 규정하며,

부칙은 시행일, 다른 법률의 개정,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제정안이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 관련하여 필요한 전반의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현재 기업승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있는 관련 조문들을 동 제정안으로 이관하여 기업승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체계로 구성하고 있음.

제정안의 기업승계 유형 체계

구분	가업승계(이관)	인수·합병형 승계(신설)
승계 주체	• 자녀 등 친족	• 친족 外 제3자(동종업계 기업, 임직원, 펀드(전문경영인), 창업자 등 다양)
승계 방식	• 상속 또는 증여	• 주식(지분) 양수도, 합병, 분할합병, 주식 포괄 교환·이전, 영업 양수도 등 M&A 방식 포괄
근거 법률	「중소기업진흥법」	제정안

제정안의 조문 구성

장	조	조 제목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기업승계자의 책무
	제5조	적용범위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제7조	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8조	기업승계 및 성장지원
	제9조	승계기업 일괄지원
	제10조	기업승계촉진계정의 설치 등
	제11조	자금지원 등
	제12조	기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제13조	기업승계 실태조사

장	조	조 제목
제3장	제14조	조세에 대한 특례
	제15조	소규모합병 등의 특례
	제16조	영업양수의 특례
	제17조	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제18조	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제19조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제20조	소집의 통지에 대한 특례
	제21조	기업승계 관련 사건의 관할에 대한 특례
	제22조	고용보험료율에 대한 특례
제4장	제23조	기업승계 중개업의 등록
	제24조	기업승계 중개업자의 의무
	제25조	비용 보조 등
	제26조	기업승계 중개업자 등록의 취소
제5장	제27조	청문
	제28조	권한 등의 위임·위탁
	제2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0조	과태료
	제31조	벌칙
부 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3조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나. 제정안의 발의배경 및 입법필요성 검토

최근(2012~2023년) 우리나라 중소기업체 CEO 중 60세 이상 비중은 22.7%p 증가(14.1%→36.8%)하여 전체인구 중 60세 이상 비중 증가폭 10.7%p(16.5%→27.2%)의 2배가 넘는 가파른 상승추세를 보임.

60세 이상 인구비중(%)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실태조사」(2013~2024),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 활용·가공

또한 최근 5년간(2019~2023년) 제조 중소기업 수를 CEO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만 유일하게 증가하여 뚜렷한 중소기업 고령화 경향이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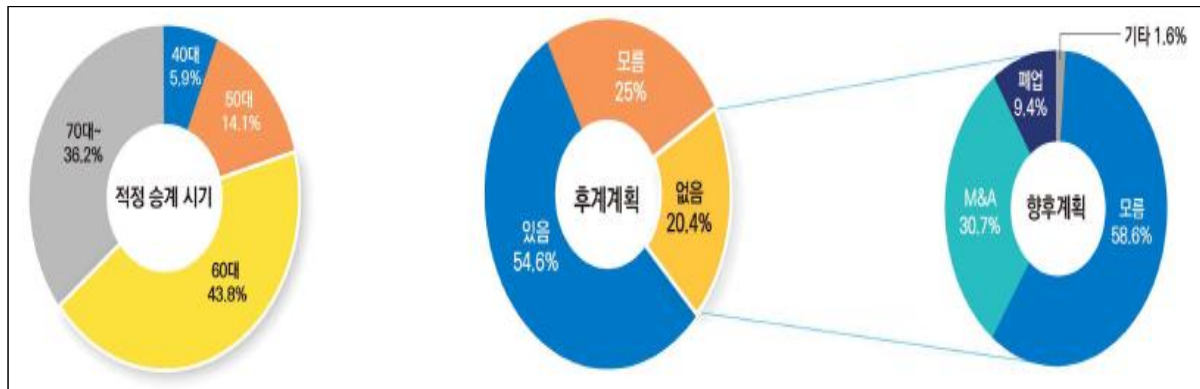
제조 중소기업 CEO 연령대별 증가율(연평균, %)

전체	30대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연령 미상
1.6	-0.9	-1.7	-3.0	-1.1	11.2	-14.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실태조사」(2020~2024) 자료 활용·가공

CEO 설문에 따르면 후계계획에 대해 ‘모름’ 또는 ‘없음’의 응답비중이 45.4%를 차지했고, 후계계획이 없는 기업 중 9.4%는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60세 이상 인구비중(%)



자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2024.11.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중 5.6만개사가 후계자 부재기업으로 추정되고 이 중 46.5%인 2.6만개사가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해당기업이 폐업할 경우 고용충격, 지역경제 위축 등이 예상됨.

제조 중소기업 후계자 부재 추정

지역	중소기업수(제조업)		후계 부재율	후계 부재기업	
	전체	60세 이상		기업수	지역분포
서울	84,745	26,466	36.1%	9,554	17.0%
경기	202,947	63,380	27.2%	17,239	30.6%
인천	36,533	11,409	29.2%	3,332	5.9%
충북	20,448	6,386	25.2%	1,609	2.9%
충남	26,520	8,282	25.6%	2,120	3.8%
대전	12,052	3,764	27%	1,016	1.8%
세종	2,046	639	28.3%	181	0.3%

전북	17,533	5,476	24.8%	1,358	2.4%
전남	19,273	6,019	24.4%	1,469	2.6%
광주	12,450	3,888	28.1%	1,093	1.9%
강원	11,348	3,544	24.4%	865	1.5%
대구	34,565	10,795	28%	3,023	5.4%
경북	41,034	12,815	24.1%	3,088	5.5%
경남	53,596	16,738	25.1%	4,201	7.5%
부산	40,126	12,531	27.9%	3,496	6.2%
울산	10,950	3,420	25%	855	1.5%
제주	4,200	1,312	25.1%	329	0.6%
합계	630,366	196,863	28.6%	56,303	100.0%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M&A를 통한 기업승계 지원방안」, 2024.11. 중 후계자 부채율 추정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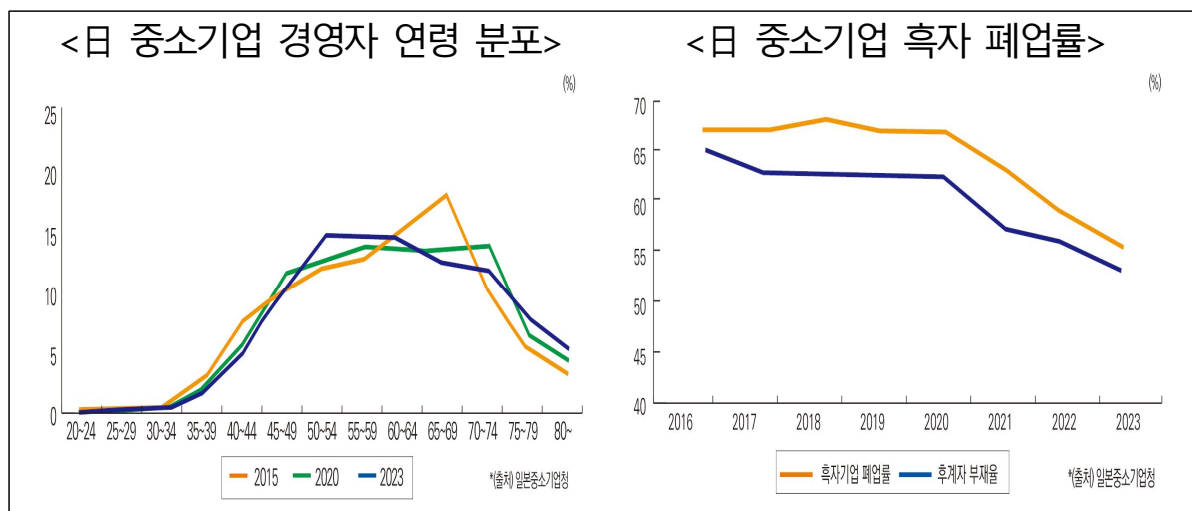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2007년 초고령 사회 진입 후 중소기업 휴폐업이 급증하자 후계부재에 대한 대안으로 「경영승계원활화법」을 제정하여 M&A를 통한 제3자 승계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조세특별조치법」에 기업승계에 따른 설비투자 세액공제, 투자손실준비금 적립, 등록면허세·부동산 취득세 경감 등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최근 경영자 연령대 하락, 후자 폐업률 감소 등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일본의 기업승계 M&A 촉진정책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경영승계원활화법	• 기업승계 지원 정책 기반(금융, 보조금, 세제지원 등)
사업인계지원센터	• 지역별 컨설팅, M&A 수요 매칭 등 정책 수요 대응 거점 운영
네트워크	• 금융기관, 기업단체 등 협업 네트워크로 기업승계 수요 발굴
중개기관 등록제	• 민간 중개기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등록제 운영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 방안」, 2025.12.

일본 기업승계 촉진정책 성과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M&A를 통한 기업승계 지원방안」, 2024.11.

이에 제정안은 자녀 부재, 당사자 기피 등으로 필연적인 한계가 발생하는 친족승계의 대안으로 M&A를 통한 제3자 승계를 제시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제공, 자금 및 세제지원, 기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상법」에 따른 합병절차에 관한 특례, 기업승계 중개업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에 따라 기업승계 M&A에 특화된 법률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초고령 사회¹⁾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후계 부재로 인한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뢰도 높은 기업승계 M&A 시장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기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제도에 중점을 두는 한편 인수·합병 승계에 한정해 「상법」상의 절차간소화 규정 등을 두고 있으나 기업승계가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기업승계에 대한 세제특례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정안은 제14조에 조세감면에 대한 총론적인 방향만 제시하고 있고 법률체계상 조세특례의 신설은 세제관련 법률에서 규정해야 하므로 세제혜택에 관한 범부처적인 협의를 통해 명확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기업승계가 가족간 상속·증여 중심이라는 비판이 있고 대다수 중소기업 CEO는 60대 이상을 승계 적정시기로 인식하나 자녀의 승계기피 등으로 후계자 부재 기업의 발생이 불가피하므로 일본처럼 종업원 승계 또는 인수·합병 승계를 포괄하는 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진입함.

참고로,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 1건²⁾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2)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제2216006호)

2. 조문별 검토

가. 제정안의 목적 및 정의규정 등(안 제1조~제6조)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 심화 상황에서 후계자 부재, 자녀 승계 곤란 등으로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기업승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 하는 것(이하 “가업승계”라 한다) 나. 중소기업이 인수·합병, 영업 양수·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이하 “인수·합병형 승계”라 한다) 3. “기업승계자”란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이전 받거나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4. “경영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중개업자”란 제23조에 따라 기업승계 중개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안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이 경영자 고령화 심화 속 기업승계 곤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지속가능성 및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임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2조는 정의규정으로 “중소기업”, “기업승계”, “기업승계자”, “경영자”, “중개업자” 등 용어의 뜻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는데,

“기업승계”의 개념을 기업의 소유권·경영권 이전으로 규정하고 그 유형을 ①상속·증여를 통한 친족대상 승계인 “가업승계”와 ②M&A 등을 통한 제3자 승계인 “인수·합병형 승계”로 구분하고 있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증여세 특례는 ①사전적 요건(18세이상, 상속·증여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과 ②사후적 요건(지분 및 자산 유지의무, 고용인원 및 총급여액 유지의무, 업종변경 금지 등)을 모두 충족해야 세제상 특례가 유지되기 때문에³⁾⁴⁾ 후계자가 있는 경우에도 가업승계제도를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

이용할 의향이 없거나 고민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기업승계를 원하는 경영자(이하 “피승계자”) 및 승계자는 자산 및 지분 구성, 해당산업 업황 등에 따라 각자 다양한 여건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제정안에 따라 상속·증여 방식의 “가업승계”와 양도 방식의 “인수·합병형 승계” 중 유리한 승계방

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목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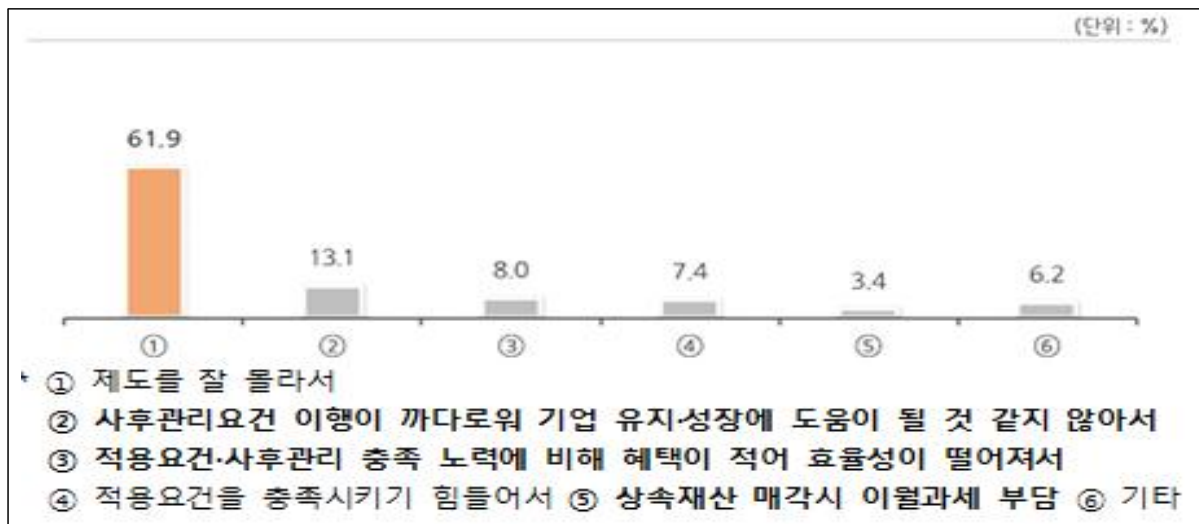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4. 12. 23., 2019. 12. 31., 2022. 12. 31.>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식을 선택함으로써 효율적인 승계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방향으로 보임.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할 의향이 없거나 고민되는 이유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25 중소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2025.5.

2) 국가 등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제 정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기업승계 활성화 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기업승계자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업승계자의 책무) ① 기업승계자는 승계기업의 지속 성장과 혁신으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종사자의 소득 유지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승계자는 국가의 시책에 협조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승계 활성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및 상호협력 등을 통한 기업승계 지원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

안 제4조는 기업승계자에게 승계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통한 고용창출과 소득유지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제정안에 따라 기업승계자에게 부여되는 자금지원, 합병등 절차상 특례 및 고용보험료 특례 등을 고려하면 기업승계자에게 기본적 책무를 부과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임.

참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정책운영 주체에 대한 책무와 함께 정책대상에 대한 책무를 규정한 입법례로는 「소상공인기본법」 5),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6), 「산업융합 촉진법」 7) 등이 있음.

5)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상공인의 책무) ① 소상공인은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조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석유화학사업자는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조하고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산업융합 촉진법」

3)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5조 및 제6조)

제 정 안
제5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경영자의 고령화, 후계자 부재 등으로 지속 성장·발전이 어려워 <u>기업승계가 필요한 중소기업</u>으로서, 창업일, 업종, 경영자 나이 및 경영 기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294조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신청을 한 기업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승계 촉진 및 활성화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안 제5조제1항은 제정안의 적용대상을 경영자의 고령화, 후계자 부재 등으로 지속 성장·발전이 어려워 기업승계가 필요한 중소기업으로 설정하면서 창업일, 업종, 경영자 나이 및 경영기간 등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의 구축과 관련 제도의 개선
2. 산업융합 관련 연구사업의 지원
3. 중소기업 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의 강화

③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과 연구기관은 산업융합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조사등은 산업융합 신제품의 개발 등을 통한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산업융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제정안에 따른 다양한 특례적용만을 위해 경영자를 고령자로 교체하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향후 하위법령에서 경영자 연령, 업력, 현경영자의 경영기간 등을 법의 적용기준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는 등 진성기업 확인절차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한편, 안 제5조제1항은 법률의 적용범위를 “기업승계가 필요한 중소기업”으로 표현함으로써 제정안 적용대상이 “매도자(Seller)”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은 제정안 적용제외대상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⁹⁾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신청 기업, 「자본시장과 금융

8)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부실징후기업”이란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통상적인 자금차입 외에 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유입 없이는 금융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태(이하 “부실징후”라 한다)에 있다고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가.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

가.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합명회사·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③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94조(파산신청권자) ①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투자업에 관한 법률」 10)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등을 규정하고 있음.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고용안정성 제고를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한다는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할 때 우량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어려운 부실기업, 즉 부실징후기업, 회생절차 개시 또는 파산신청 기업 등을 제외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임¹¹⁾.

다만, 중소기업 중 상당수가 코스닥, 코넥스 등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상장법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가업승계를 추진할 경우 제정안 적용을 통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⑮ 이 법에서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 주권상장법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나. 주권과 관련된 증권의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

11) 유사 입법례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있음.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공급안정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

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

나. 공급망 위협 해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생산, 저장 및 대체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 안정 활동을 하는 사업재편

2. 미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제12항에 따른 사업재편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미래 사업재편 판정을 받은 기업

3.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고용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기업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파산신청을 한 기업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한 제정안이 매수자(Buyer)에 대해서는 특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매수자(Buyer)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도 「상법」이 주주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하여 정한 주식매수청구권, 소규모합병, 영업양수도, 합병절차 등 일반규정에 대한 제정안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일반주주로 구성된 주권상장법인에 있어 소수 경영진에 의한 의사결정으로부터 다수의 분산된 일반투자자를 보호할 필요성을 기업승계 추진을 위한 동 제정안의 취지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중앙회는 상장기업을 지원대상에서 일괄적으로 배제하기 보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취지 등에 따라 상장기업 적용배제가 필요한 「상법」 특례에 대해 선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안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은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촉진 및 활성화 관련 제정안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나. 중소기업의 승계 활성화 지원 등(안 제7조~제13조)

제 정 안

제7조(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승계 활성화 촉진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업승계 활성화 촉진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업승계 활성화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2. 기업승계 관련 동향, 현황 및 전망
3. 기업승계 활성화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업승계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업승계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제23조에 따른 기업승계 중개업자,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업승계 및 성장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승계자의 원활한 기업승계와 승계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업승계에 관한 정보제공과 법무·회계 상담 지원
2. 경영·기술·재무 등의 자문 지원
3. 판로확대 및 해외진출 등 성장촉진 지원
4. 그 밖에 승계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승계기업 일괄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승계기업 지속 성장에 관한 지원사업 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일괄하여 연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승계기업을 일괄·연계 지원하는 경우에

제 정 안

는 고용유지, 설비투자 등 일정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그 밖에 승계기업 지속 성장에 관한 일괄·연계지원 기준, 조건,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업승계촉진계정의 설치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승계촉진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에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3조 및 제25조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정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제8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3조 및 제25조의 사업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

③ 그 밖에 계정의 수입·지출 및 운용과 회계·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융자, 투자, 출연, 보조금 등의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기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승계 및 승계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②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은 기업승계 및 승계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업승계 및 승계기업에 우선적으로 융자지원을 하거나 융자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제 정 안

제12조(기업승계지원센터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승계 촉진 및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기업승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승계 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승계에 필요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수 승계기업 인증 및 포상에 관한 사항
4. 외국 사례 등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선진제도 발굴에 관한 사항
5. 기업승계 정보의 효율적인 연계 및 활용을 위한 기업승계 플랫폼의 구축·운영
6. 제23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승계 중개업자 정보의 유지·관리
7. 그 밖에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 제고 등 기업승계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 운영 및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전담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기업승계 플랫폼의 구축·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업승계 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과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기업승계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정 안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제23조에 따른 기업승계 중개업자,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시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7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업승계 활성화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①내용적으로 시책의 기본방향, 기업승계 현황 및 전망, 지원사항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포함하되, ②절차적으로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및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8조는 중소기업 기업승계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사전적·사후적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전지원으로서 정보제공 및 법무·회계 상담지원은 기업승계과정에 필요한 폭넓은 정보탐색 및 분석,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M&A 전략수립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안 제8조제1호),

사후지원으로서 경영·기술·재무 등 자문지원, 판로확대 및 해외진출 등은 인수합병형 승계가 조직통합(PMI, Post-Merger Integration)¹²⁾,

12) Post merger integration(PMI)은 기업 인수합병(M&A) 거래가 종료된 후 두 기업의 조직, 문

노후설비 개선 등 비용 증가요인이 있으므로 승계 이후 기업안정화 및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이해됨(안 제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안 제9조는 기업승계 완료 후 승계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일괄연계 지원 및 사업운영시 고용유지, 설비투자 등 조건부과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기업승계를 완료한 승계기업은 시설개선, 기술개발, 조직통합 등 지원수요가 다양할 수 있고 특히 AI 등 딥테크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위험(R&D risk), 시장-제품 위험(market-product risk)이 높은 고위험·고성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 투자만으로는 자금 등을 감당하기 어렵고 후속투자, 규제완화 등 재정적·제도적 집중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에 따라 정책자금 투·융자, 기술보증, R&D 지원, 수출바우처 등이 패키지 형태로 제공될 경우 승계이후 기업안정화, 지속성장 및 시너지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한편 제정안이 승계기업 일괄·연계지원시 고용유지 등 조건부과를 통한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지원에 대한 효과성 담보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기업승계자의 책무를 규정한 안 제4조와 같은 취지로 이해됨¹³⁾.

화, 시스템, 인력, 전략 등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 전 과정을 말하며 단순히 조직이나 시스템을 합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두 기업이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만드는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과정을 의미함.

13) 제4조(기업승계자의 책무) ① 기업승계자는 승계기업의 지속 성장과 혁신으로 일자리 창출과

안 제10조는 중소기업부장관이 기업승계촉진계정을 설치하고 기술보증기금 등의 기관에 계정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은 제정안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연금은 그 특성상 다른 보조금에 비하여 집행상 탄력과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관리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¹⁴⁾ 「국가재정법」¹⁵⁾은 별도의 조항을 두어 출연금 지원시 엄격한 법률적 근거를 요구하고 있고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은 출연금 편성을 위한 타당성 기준으로 법령상 출연근거 및 기관명이 명백하고 사업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

한편 현행 「기술보증기금법」¹⁶⁾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은 기금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기업승계를 위한 정부출연금을 M&A 지원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중소기업 종사자의 소득 유지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승계자는 국가의 정책에 협조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4) 사후관리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데 보조금은 집행잔액 및 이자를 사후정산하여 국고반환하는 반면, 출연금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에 따라 처리하고 비연구개발사업은 각 부처 및 공공기관 개별지침에 따름.

15)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및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16)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제1항제2호의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별도의 ‘기업승계촉진계정’을 설치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동 계정에 출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와 정책 일관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금융위원회는 기업승계촉진계정 위탁기관에 신용보증기금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안 제11조는 기업승계과정 및 승계기업에 대한 국가 등의 용자·투자·출연·보조금 등 자금지원시 우대와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의 보증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용자시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기업승계자 등 특정대상에 대한 우선 보증은 「신용보증기금법」 17)의 기관설립 목적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제정안에 따라 기업승계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금융상 우대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기업승계자의 대규모 인수자금 조달부담을 완화하고 주식매수청구, 승계채무 변제, 법인세 납부 등을 위한 유동성 확보에 도

17) 「기술보증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움이 될 것으로 보임.

한편 제정안은 승계기업에 보증·용자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상 우대지원에 대한 효과성 담보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안 제9조에서 승계기업을 일괄지원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붙이도록 한 것과 같이 고용유지 등 조건부과를 통한 사후관리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음.

안 제12조는 기업승계 관련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행할 기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기능 및 역할, 경비의 지원, 지정 취소 등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승계 정책수요자(승계준비 및 승계희망 기업)를 위한 종합적 정책지원 접점 인프라가 부재하고 현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¹⁸⁾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가업승계지원센터는 가업승계 희망기업에 국한된 세무·법무 등 컨설팅만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기업승계 수요발굴, 컨설팅, M&A 자문·중개, 승계후

1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3(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업승계 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가업승계에 필요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수 승계기업 인증 및 포상에 관한 사항
4. 외국 사례 등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선진제도 발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사항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 등 기업승계 전반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승계지원센터 지정·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제정안은 기업승계지원센터 중 기업승계플랫폼 관리·운영 등 특정 기능을 전담하는 기관을 ‘전담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중소기업의 매각계획이 노출될 경우 해당기업의 신용도 하락, 핵심 인력 및 거래처 이탈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각 기업승계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M&A 수요정보(매수-매도)가 기업승계플랫폼 전담센터로 집적되어 보안·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이해되며 적절한 입법방향으로 판단됨.

참고로 일본의 경우 2008년 제정된 「경영승계원활화법」에 따라 전국 47개 광역자치단체에 사업승계·인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업승계 진단 등 M&A 준비, M&A 이후 경영통합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양수-양도 매칭기능을 수행하는 온라인 M&A 중개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공의 사업승계·인계지원센터와 민간의 M&A 중개업체를 중심으로 연간 3,000~4,000건의 M&A 거래가 성사되고 있음.

안 제13조에서는 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의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기업승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기관의 장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견진술 요청 근거를 두고 있음.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기업승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부재한 실정인데, 제정안에 따르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기업승계에 관한 정책기획과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 중소기업의 승계에 대한 특례(안 제14조~제22조)

1) 조세에 대한 특례(안 제14조)

제 정 안
제14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승계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안 제14조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편으로 조세(국세 및 지방세) 감면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M&A 방식 기업승계자는 승계기업의 우발채무 등 리스크를 부담하므로 이를 경감시키기 위한 세제상 유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승계의 경우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공제, 증여세 특례 등 조세 인센티브가 있지만 인수·합병형 기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은 없는 상황이므로 기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한 실효성 높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방향으로 보임.

다만, 세제상 지원은 세액공제·세액감면 등 조세감면뿐만 아니라 과세이연¹⁹⁾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국세 또는 지방세에 대

한 감면만을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을 세부담의 경감과 이연 모두를 포괄하는 세제지원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참고로 일본은 M&A 후 실행한 설비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인수기업의 등록면허세 및 부동산 취득세 경감 등과 함께 투자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5년간 법인세 산정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세감면과 과세이연을 모두 운영하고 있음²⁰⁾.

19)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과세이연(課稅移延)”이란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중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讓渡價額)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대체 취득한 경우 중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讓渡差益)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이 중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할 때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20) 日 「조세특별조치법」

제10조의5의3 특정 중소기업자(…중략…)이 …(중략)… ‘지정기간’ 내에 생산 등 설비를 구성하는 …(중략)… 경영력 향상 설비 등을 제작 또는 건설하여 이를 국내에 있는 해당 특정중소기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용(중략, 이하 이 조에서 “지정사업용”이라 한다)에 제공한 경우에는, …(중략)… 사업소득 금액 계산상 해당 특정 경영력 향상 설비 등의 상각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정 경영력 향상 설비 등에 대해 동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상각비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통상각액’이라 한다.)과 특별상각한도액(해당 특정 경영력 향상 설비 등의 취득가액에서 보통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다음 항에. 단, 해당 특정경영력향상설비 등의 상각비로서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금액 이상을 밑돌 수 없다.)

제42조의12의4 중소기업자 등…(중략)…이 ‘지정기간’ 내에 생산 등 설비를 구성하는…(중략)… 경영력 향상 설비 등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지정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을 포함한 사업연도(…중략…)의 해당 특정 경영력 향상 설비 등의 상각한도액은 법인세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정 경영력 향상 설비 등의 보통상각한도액과 특별상각한도액(해당 특정 경영력 향상 설비 등의 취득가액에서 보통상각한도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56조 (전략) 사업승계 등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의 취득(구입에 의한 취득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고, 이를 그 취득일을 포함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그 취득을 한 주식 등(이하 이 항에서 “특정주식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이 십억엔을 초과하는 경우 및 같은 날에 해당 조치에 기인하거나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는 보험으로서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의 계약(제3항제7호에서 “특정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해당 특정주식 등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당 특정주식 등(합병으로 합병법인에 이전하는, 그 감액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금액에 산입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의 금액을 손금경리의 방법으로 각 특정법인(특정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다음 항 및 제3항에서 같다.)

다만, 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의 신설은 「조세특례제한법」²¹⁾ 등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주기적 평가를 거쳐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취지와 상충되며 개별법에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필요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여 세제 지원이 가능하므로 개별법에 근거규정을 둘 실익도 없다는 이유로 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는 개별법상 규정된 지방세 감면 규정은 선언적 의미로 볼 수 있고 지방세 특례규정 신설 등 감면 여부는 지방세 관계법²²⁾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제정안은 일반 납세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지방세 감면도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지방세 특례 운영에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별로 중소기업사업재편투자손실준비금으로 적립한 때(해당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까지 잉여금 처분에 의해 적립금으로 적립하는 방법에 의해 중소기업사업재편투자손실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적립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실금액에 산입한다.

② 전 항의 중소기업사업재편투자손실준비금을 적립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특정법인과 관련된 중소기업사업재편투자손실준비금의 금액(…중략…) 중에 그 적립된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적립사업연도"라 한다.)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것(이하 이 항에서 "거치기간 경과준비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치기간 경과준비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적립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전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금액에 산입된 해당 중소기업사업재편투자손실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에 해당 각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이를 60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해당 계산한 금액이 해당 거치기간 경과준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제1항의 중소기업사업재편투자손실준비금을 적립한 법인이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해당하게 된 날을 포함한 사업연도(제3호의 경우에는 합병일 전날을 포함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액에 산입한다.

1. ~ 8. (생략)

④ ~ ⑦ (생략)

21)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소규모합병 등의 특례(안 제15조)

제 정 안
제15조(소규모합병 등의 특례) 중소기업이 기업승계를 위하여 합병 또는 분할합병 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제15조는 기업승계를 위한 합병 또는 분할합병시 「상법」에 따른 소규모합병 요건을 존속회사 발행신주 비율의 10%에서 20%(지분회식률 9.09%→ 16.67%)²³⁾로 완화하고 있음.

「상법」 제434조 및 제522조제1항에 따라 회사가 합병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하나 발행신주 비율이 낮아 지분회식률이 미미한 경우(발행신주 비율 10% 이하, 지분회식률 9.09% 이하) 존속회사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상법」 제527조의3제1항).

제정안은 이와 같은 소규모합병 요건 즉, 발행신주 비율을 완화함으로써 소규모 기업승계 M&A의 주주총회 생략요건이 확대되어 승계소

23) 지분회식률 = $1 - \frac{1}{1 + \text{발행비율}}$

지분회식률 공식 자체에 관한 법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상법」이 정한 주식수 구조에서 수학적으로 당연히 도출되는 계산식임(예시: 발행주식수가 100주에서 110주로 증가하면 기존주주의 회식률은 9.09%가 됨)

요시간이 단축되고 기업승계자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상법」에 따른 소규모 합병은 존속회사 주주의 지분희석이 미미한 경우(지분희석률 9.09%까지 허용) 신속한 기업결합을 위해 적용되는 예외적 규정이라는 점, 소규모합병에 따라 주주총회를 생략할 경우 합병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무력화된다는 점 등을 기업승계 촉진을 위한 제정안 취지와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u>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u> 하여야 한다.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 <u>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u>
③ <u>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u>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가 결의가 있는 때에 <u>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u>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u>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u>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가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u>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

「상법」

-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
- ⑤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영업양수의 특례(안 제16조)

제 정 안

- 제16조(영업양수의 특례) ① 기업승계자가 중소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면서 그 양수가액이 기업승계자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영업양도·양수계약서에 기업승계자가 이사회회의 승인으로 중소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기업승계자는 중소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기 위하여 영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상법」 제289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영업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 내용

제 정 안

2.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양수한다는 뜻

④ 기업승계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가 있었던 날부터 2주 이내에 기업 승계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를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영업양수를 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 제16조는 기업승계를 위한 영업을 양수시 양수가액이 기업승계자 순자산액의 10% 이하인 경우 「상법」 제374조에 따른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제374조의2에 따른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을 배제하고 있음.

「상법」 제374조에 따라 회사가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영업양수를 수반하는 기업승계의 경우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어 양수절차가 간소화되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자금 조달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영업양수·양도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중대한 구조변경이므로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는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

항이 경미한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 이에 따라 「상법」 제374조의3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발행주식 90% 이상을 상대방이 소유한 경우에만 간이영업양수도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반대주주매수청구권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영업양수도와 관련한 유사 입법례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양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특례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소수 경영진에 의한 의사결정으로부터 다수의 분산된 일반투자자를 보호할 필요성 등을 고려한 입법자의 결정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u>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u>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3. <u>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u> ② 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74조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상법」

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374조의3(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① 제3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해당 행위의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의 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이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①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상법」

다른 주식회사의 최종 재무상태표상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영업양도·양수계약서에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다른 주식회사는 영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영업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 및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营业을 양수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를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면 이 조에 따른 영업양수를 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안 제17조)

제 정 안

제17조(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소기업이 「상법」 제522조에 따른 합병, 제530조의2제2항에 따른 분할합병,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374조에 따른 영업양도 및 양수(이하 “합병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상법」 제3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 총회일 7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 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이 합병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0조의4제1항, 제360조의17제1항, 제522조의2제1항, 제530조의7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회일의 7일 전부터 합병등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

제 정 안
까지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이 합병등을 결의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폐쇄일 또는 기준일부터 7일 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안 제17조는 중소기업이 합병등을 하는 경우 주주총회 통지기간(주총 2주전→7일전), 서류 공시기간(주총 2주전→7일전), 주주명부폐쇄 공고기간(폐쇄일 또는 기준일 2주전→7일전)을 「상법」의 일반규정보다 단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합병등 통지 시기

구 분	「상법」	제정안
주주총회 통지	주주총회일 2주전	주주총회일 7일전
서류 공시	주주총회일 2주전	주주총회일 7일전
주주명부폐쇄 공고	폐쇄일·기준일 2주전	폐쇄일·기준일 7일전

제정안에 따라 합병절차가 간소화되어 거래당사자가 부담하는 시간 비용(Time Cost)²⁴⁾이 절감되고 기(既) 협상된 거래조건의 변경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거래성사율(Deal Closing)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일반적인 합병의 경우에도 주주총회 통지기간 등을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기업승계의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의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24) 특정 활동이나 프로젝트에 소요된 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 비용으로서 노동 비용, 지연으로 인한 기회 손실, 생산성 저하 등을 화폐 가치로 환산한 것을 말함.

참고로 합병절차의 간소화 등을 규정한 입법례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²⁵⁾,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²⁶⁾ 등이 있음.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④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 ①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

2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3(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합병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알릴 때는 「상법」 제3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일을 주주총회일 7일 전으로 할 수 있다.

③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하기 위하여 합병계약서 등을 공시할 때는 「상법」 제52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시 기간을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7일 전부터 합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

2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8조(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③ 승인기업이 합병등을 결의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폐쇄일 또는 기준일로부터 7일 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는 「상법」 제289조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상법」

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0조의4(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①이사는 제360조의3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부터 주식교환의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주식교환계약서
2.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제360조의3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제360조의9의 규정에 의한 간이주식교환의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전 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주식교환을 하는 각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제360조의15(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관에서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될 수 있다.

②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

제360조의16(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①주식이전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0조의17(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의 공시) ①이사는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부터 주식이전의 날 이후 6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이전계획서
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제360조의16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전 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0조의17(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의 공시) ①이사는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부터 주식이전의 날 이후 6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이전계획서
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제360조의16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전 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22조의2(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①이사는 제522조제1항의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2. 합병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상법」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②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分割合併”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530조의3(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①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30조의7(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①분할회사의 이사는 제530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 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2.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3.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대차대조표
4.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가 발행되거나 자기주식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②제530조의6제1항의 분할승계회사의 이사는 분할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합병의 등기를 한 후 6개월 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1. 분할합병계약서
2. 분할회사의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3.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5) 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안 제18조)

제 정 안
제18조(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① 중소기업은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 5,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합병등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합병등에 대한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은 「상법」 제440조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병합할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이 기업승계를 위하여 합병등을 함에 있어 채무에 대한 은행 지급보증 또는 보험증권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 제18조는 인수·합병형 기업승계를 할 때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을 단축(1개월→10일)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²⁷⁾에 대해 따로따로 최고해야 하는 「상법」 제232조 및 제527조의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고로 갈음하며, 채무에 대한 은행 지급보증 또는 보험증권 제출 등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없음을 증명한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생략하는 등 「상법」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완화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채권자에 대한 공고, 개별최고 등 엄격한 절차 준수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시간과 비용을 경감하는 동시에 지급보증 등 대체 보호장치를 통해 채권자 권익보호를 도모하는 취지로 이해됨.

27) 회사의 장부 기타 근거에 의하여 그 성명과 주소가 회사에 알려져 있는 자는 물론이고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8516 판결).

다만, M&A는 자산·부채의 포괄승계를 수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을 가져오는 회사의 중대한 변화이므로 「상법」은 피합병법인 뿐만 아니라 합병법인 채권자에게 대한 보호절차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도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을 뿐 채권자 보호절차까지 생략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채권자에게 알리고 이의를 받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대법원은 「상법」이 회사가 분할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만약 그러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²⁸⁾²⁹⁾.

28) 대법원 2004.8.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판결요지]

[1] 상법은 회사가 분할되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책임재산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소유로 분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분할 전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에는 회사가 분할되더라도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따로 이를 최고할 필요가 없도록 한 반면에, 다만 만약 이러한 연대책임의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한다면 회사분할제도의 활용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연대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

한편 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규정에 ‘기업승계’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문구를 보완하여 일반적인 합병의 경우에도 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상법」
제232조(채권자의 이익) 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익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익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이익을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①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익이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의 채무 중에서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정할 수 있게 하면서, 그 경우에는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그 부분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게 하여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도록 규정하였다고 해석된다.

- [2]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절차를 제대로 거쳤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만약 그러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29) 이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8516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두4731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상법」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

③ 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
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
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
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③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회사는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
에서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
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439조제3항 및 제527조의5를 준용한다.

제530조의11(준용규정) ② 제374조제2항, 제439조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안 제19조)

제 정 안
제19조(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① 중소기업이 기업승계를 위하여 합병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의5제1항, 제374조의2제1항, 제522조의3제1항, 제530조의11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승계 기업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승계기업은 「상법」 제37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안 제19조는 중소기업이 기업승계를 위하여 합병등을 하는 경우 「상법」에 따라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어지는 주식매수 청구기간을 단축(20일→10일)하고 주식매수 청구를 받은 승계기업의 매수 의무기간을 연장(2개월→6개월) 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시기를 앞당겨 M&A 절차를 촉진하고 청구권 행사 후 매수기간을 확대하여 승계기업(합병후 존속법인)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매수청구기간 단축으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 가능성,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비상장법인의 특징, 합병비율 산정시 정보의 비대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상법」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 ①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74조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상법」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530조의11(준용규정) ②제374조제2항, 제439조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7) 소집통지에 대한 특례(안 제20조)

제 정 안
제20조(소집의 통지에 대한 특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상법」 제36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1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 제20조는 소재불명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생략요건을 「상법」의 일반요건인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기업승계 절차 촉진을 위한 것이나,

법무부는 기업승계절차를 촉진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주주총회 개최주기가 1년이상인 경우 1회의 통지 미도달로 소재불명 간주하는 것은 주주권리의 지나친 제약이 우려되므로 소재불명 기간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기간 경영한 중소기업의 인수·합병형 승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정안과 같이 일부 주주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승계 지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일본의 경우 「경영승계원활화법」을 통해 소재불명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특례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³⁰⁾.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u>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u>

30) 「중소기업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소재 불명 주주의 주식 경매 및 매각에 관한 특례)

① 「회사법」(2005년 법률 제86호) 제197조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동항 제2호 중 '5년간'은 '1년간'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5년간"은 "1년간"으로,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전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는 "해당 등록주식질권자에 대하여 한다"로,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도달하지 아니한다"로, 같은 항 제2호 중 "5년간"은 "1년간"으로 한다.

8) 사건관할에 대한 특례(안 제21조)

제 정 안
제21조(기업승계 관련 사건의 관할에 대한 특례) ① 기업승계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의 유형과 등기사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법」 제113조에 따른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 제21조는 기업승계를 위한 부동산 등기신청시 해당 부동산 관할 등기소가 아닌 곳에서도 등기사무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재는 「부동산등기법」³¹⁾에 따라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등기소에서만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기업이 지방소재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을 승계하는 경우 공장 소재지와 인수기업 소재지 모두에서 등기사무 처리가 가능해지므로 등기행정 편의가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승계(상속)의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³²⁾에 따라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시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특

31) 「부동산등기법」

제7조(관할 등기소) ①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32)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상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의 유형과 등기사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례를 이미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 조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9) 고용보험료율에 대한 특례(안 제22조)

제 정 안
제22조(고용보험료율에 대한 특례) 기업승계로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양도되거나 기업이 합병된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양수 또는 합병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연도부터 다음 보험연도까지 양수 또는 합병 전에 적용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있다.

안 제22조는 인수·합병형 기업승계시 승계 다음 연도까지 기존 고용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³³⁾ 및 같은 법 시행령³⁴⁾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많을수록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율은 높아지므로 인수·합병형 기업승계로 고용규모가 증가할 경우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에 공

3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8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18

감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는 양도·합병으로 인해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고용보험료율이 높아지는 경우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3년 동안 기존 보험료율을 이미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함.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승계 M&A 시 고용보험료 부담완화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은 안정적 정책운영을 위해 동 조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라. 기업승계 중개업자의 등록·관리 등(안 제23조~제26조)

제 정 안
제23조(기업승계 중개업의 등록) ① 기업승계를 위한 합병 등 절차에 대한 컨설팅 및 중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절차 및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업승계 중개업자의 의무) ① 중개업자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중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중개 절차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중개 목적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개업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개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중개업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지원센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비용 보조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3조에 따라 등록된 중개업자를 통하여 기업승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보험료, 기업실사 수수료, 중개 자문료 등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기업승계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보조의 지원 기준·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기업승계 중개업자 등록의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한 경우 2.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4조를 위반하여 중개업자의 중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안 제23조는 인수·합병형 기업승계 관련 컨설팅 및 중개사업을 하려는 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기업승계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제정안이 기업승계 중개업에 대한 의무등록제를 규정한 것은 소형 중개업체의 난립 및 과당경쟁 등을 방지하고 M&A 중개·자문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나,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자의 경우 원천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특히 현재 민간영역에서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컨설팅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이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제정안에 따라 컨설팅을 위한 중개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신규로 별도의 등록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그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제정안에 따른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컨설팅·중개업을 하는 경우에 제재사항도 없기 때문에 컨설팅·중개업 등록에 관한 법적 성격 내지 역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미등록 회계법인 등이 M&A 컨설팅을 하였는데 해당 M&A가 기업승계에 부합한 경우 의도치 않은 법률 위반이 발생하게 되므로 중개업 등록을 재량사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참고로 일본이 운영중인 기업승계 중개업자 등록제도는 등록하지 않아도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업승계·인계보조금 및 중개수수료 지원 등은 등록을 해야만 받을 수 있음³⁵⁾.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신뢰도가 높은 회계법인·증권사·투자은행 등은 경험이 풍부한 인력에 대한 비용 등으로 중·대형 M&A에 중점을 두고 있고, 소형 중개업체의 경우 자본시장이 고도화된 미국 등과 달리 한국시장에서의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중개업자를 등록·관리하고 등록 중개업자를 통한 기업승계에 수반되는 비용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안 제24조는 비밀누설 및 중개 목적외 이용 금지,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 중개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25조는 등록중개업자를 통한 기업승계를 진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보험료, 기업실사 수수료, 중개 자문료 등을 기업승계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안 제26조는 중개업자의 등록요건 미달, 의무 위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개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함.

35) M&A 지원기관등록제도 (<https://ma-shienkikan.go.jp/>)

마. 제5장 보칙(안 제27조~제31조) 및 부칙

1) 보칙(안 제27조~제31조)

제 정 안
제27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2. 제26조에 따른 중개업자의 등록 취소 제28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과태료)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 및 특례를 받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31조(벌칙)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 절차 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중개 목적외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 제27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업승계지원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중개업자에 대한 등록취소를 하려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해야 함을 규정함.

안 제28조는 중소기업부장관의 권한을 위임하거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고 안 제29조는 업무를 수탁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형법」에 따른 뇌물죄 등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는데, 기업승계 지원 및 관리 업무는 다양한 금전적 이해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간이 그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도 공무 수준의 높은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안 제30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정안에 따른 지원 및 특례를 받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31조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중개업자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에 따른 지원정책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2) 부칙

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4장제7절의 제목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지원”을 “중소기업의 명문장수기업 지원”으로 한다.
제62조의2, 제62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정 안

제15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 및 제6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을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3조(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3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기업승계지원센터로 본다.

안 부칙 제1조는 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승계플랫폼 등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지원사업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됨.

안 부칙 제2조는 가업승계 이관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동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조항을 변경하는 규정이고, 안 부칙 제3조는 기존의 가업승계지원센터를 제정안에 따라 지정된 기업승계지원센터로 간주하는 규정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3에 따라 지정되어 이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는 별도의 지정 없이도 종전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됨.

문 의 처
02) 6788-5459

참고 1

현행 가업승계 관련 지원정책 현황(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 家業승계 조세지원 제도 운영(기재부, 국세청)

□ (가업상속공제) 과세대상 재산 가액을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

- (대상)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 + 해당 기업을 10년이상 경영
↳ 가업기간별 공제한도 차등(【10년】 300억원, 【20년】 400억원, 【30년】 600억원)
- (상속인 요건) 18세 이상이면서 상속 개시일 2년전부터 가업에 종사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 등)

□ (증여세 특례) 가업승계 증여시 증여세 특례 세율(10~20%) 적용

- (대상)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 + 해당 기업을 10년이상 경영
↳ 가업기간별 공제한도 차등(【10년】 300억원, 【20년】 400억원, 【30년】 600억원)
- (수증자 요건) 18세 이상이면서 증여 2년 前부터 가업에 종사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등)

□ (납부 유예) 상속공제, 증여세 특례와 별도로 가업을 유지하는 기간에는 상속세·증여세를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운영('23~)

* 동 제도는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특례와 중복 적용 불가

2. 家業승계지원센터 지정·운영(중기부) ※ 중기부 예산지원('24. 7.04억원)

□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 家業승계지원센터를 지정(→중기중앙회)하고, 승계 준비기업 및 승계 완료기업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08~)

* ▲세제·법률 상담, ▲승계 준비·완료 경영자 교육 및 네트워크, ▲인식개선 등

참고 2

일본의 기업승계 정책 및 성과(자료: 중소기업부)

□ 경영승계원활화법 제정 등 기업승계에 대한 정책 역량 집중



구분	지원내용	주요내용
지원 인프라	① 사업승계·인계 지원센터	· 사업승계진단 등 M&A 준비, 비용부담 완화, M&A 이후 경영통합 지원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중소기업 승계 지원 * 47개 광역자치단체에 1거점씩 설치, 중소기업에 전국본부 설치
	② M&A 지원기관 등록제도	· 중소기업 M&A 중개업체의 난립에 따른 시장교란을 막기 위해 '21.8월 등록제 시행' * 자율규제단체로 'M&A중개협회 설립('21.10)' · M&A 중개업체의 주요 업무는 양도·양수 쌍방과 계약을 체결하여 매칭지원 등을 수행하고, FA는 양도측 혹은 인수측 일방과의 계약에 따라 매칭 등 수행 *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 M&A 거래업체의 중개수수료 등 보조
	③ M&A 플랫폼	· 양수·양도측의 매칭 기능을 수행하는 온라인 M&A 중개 플랫폼 운영 · 매칭 기회 제공,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M&A 관련 인식 조성
	④ 인정경영혁신 등 지원기관	· 중소기업이 경영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자에 대해 인증해주는 공적 지원기관 · 특례승계계획 수립시 인증경영혁신 등 지원기

구분	지원내용	주요내용
		관에 의한 지도·조언 필요 * 상공회의소 같은 중소기업지원기관 외에도 금융기관,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을 인증 경영혁신 등 지원기관으로 인증
금융	⑤ 일본정책금융공고법 특례 (주식매입비 등 용자 지원)	· 일본정책금융공고에 의한 주식매입비용 등에 대한 용자 지원 및 특별이율 적용 * 승계한 채무의 변제자금, 주식·사업용자산 취득 자금, 상속·증여세 납부 자금 등
	⑥ 중소기업신용보험법 특례 (신용보증 확대)	· 승계 후 사업을 영위하는데 드는 자금 등에 대해 중소기업신용보험법상 보통보험·무담보보험 등을 '별도의 보험'으로 설정 * 특례에 의해 신용보증협회의 채무보증도 실질적으로 별도의 보증으로 취급되어 중소기업자가 해당 채무보증을 받으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 용이
	⑦ 중소기업 경영력 강화 지원 펀드	·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를 배경으로 사업승계, 사업재편, 재구축을 통해 경영기반 강화와 사업재건에 나서는 중소기업자에 투자
	⑧ 사업승계 시 경영자 보증 해제 지원	· 정부관계기관 무보증화 확대 · 사업승계를 위한 특별보증제도 창설 · 사업승계에 초점을 맞춘 「경영자 보증 가이드라인」의 특칙 시행 · 전문가 지원(경영자 보증 해제 및 사업승계특별보증제도 취급) · 금융기관의 경영자 보증 없는 용자 실적 등(KPI)을 공표
세제	⑨ 중소기업 경영강화세제 (설비투자 감세)	· 경영력 향상 계획에 따라 일정의 설비를 취득했을 경우, 투자액의 10%(자본금 3000만엔 초과일 경우 7%)를 세액공제 또는 전액 즉시 상각
	⑩ 중소기업 사업재편	· 사업승계 등 사전조사를 기재한 경영력 향상 계획에 따라 M&A를 실시했을 때 투자액의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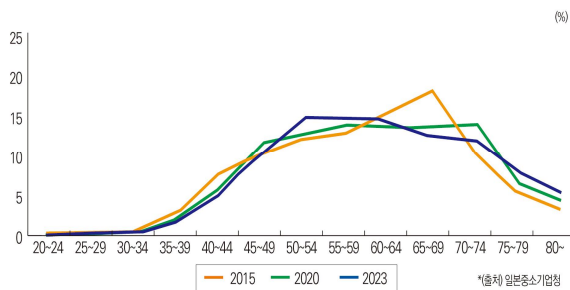
구분	지원내용	주요내용
	투자손실준비금	이하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 가능 * 적립한 금액은 손금산입
	⑪ 등록면허세·부동산취득세 경감	· 경영력향상계획에 의거하여 , 사업 승계시 등록면허세·부동산 취득세 경감 * 등록면허세: 0.4~2.0% → 0.2~1.6% * 부동산취득세: 3.0~4.0% → 2.5~3.3%
	⑮ 소재불명주주 회사법 특례	·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전제로 소재불명 주주 로부터 주식매입 등에 요하는 기간을 단축(5→1년) 특례 부여
보조금	⑬ 사업승계·인계 보조금 (경영혁신지원)	· M&A 후 설비투자나 판로개척비용 등 보조 · 보조율 : 1/2~2/3, 한도 : 100~600만엔
	⑭ 사업승계·인계 보조금 (전문가활용)	· M&A 등록사업자를 활용한 경우 중개수수료, 기업가치평가 비용 보조 · 보조율 : 2/3, 한도 : 100~600만엔

□ CEO 연령대 하향 및 흑자 폐업률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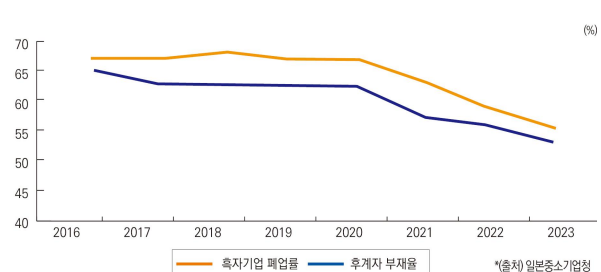
○ M&A가 활성화되면서 ^경영자 연령대 하향, ^흑자 폐업률 하향 등 기업승계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완화하고 있음

* **최다 분포 연령** ('15년) 59~65세 → ('23년) 55~59세 ** **흑자 폐업률** ('16) 64% → ('23) 52.4%

<日 중소기업 경영자 연령 분포>



<日 중소기업 흑자 폐업률>



참고 3

가업승계지원센터 운영현황[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개 요

-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 家業승계지원센터를 지정(→중기중앙회) 가업승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예산지원('26. 7.04억원)

* ▲세제·법률 상담, ▲승계 준비·완료 경영자 교육 및 네트워크, ▲인식개선 등

□ 주요 운영실적

- 승계준비 기업에 대한 컨설팅(세무, 법무 등) 프로그램 운영

<승계 컨설팅 제공 현황 (최근 5년,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컨설팅 건수(건)	154	146	162	171	169
자체 만족도 (점)	4.45	4.57	4.68	4.7	4.68

- 가업승계자(예정자 포함) 역량 강화 교육(차세대 CEO 스쿨 운영)

* 차세대 CEO의 경영역량 강화 및 승계전략 수립, 승계 사례 공유 등

<차세대CEO스쿨 운영실적 (최근 5년)>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교육 연인원 (명)	575	836	1,173	1,031	725
자체 만족도 (점)	4.7	4.73	4.62	4.62	4.59

- 가업승계 인식개선 사업(TV 방송, 승계기업 포상, 포럼 등)
 - (TV 방송) 기업승계의 경제·사회적 가치, 국내외 우수사례 등 조명
 - (포상) 가업승계로 성장하고 있는 우수 기업을 포상(장관상 등)
 - (포럼) 1·2세대 중소기업인이 동반 참여하는 소통의 장 운영

□ 성과 및 한계

- (성과) 家業승계 정책 수요자에 대한 유일한 정책 접점으로서, 컨설팅·업계 의견수렴* 등 역할 → 제도안착(활용 증가) 기여

* 가업승계활성화위원회(업계, 학계 참여) 운영 등으로 제도 개선 건의 등

- (한계) 친족 승계 곤란 기업에 대안(M&A 지원 등) 부재

⇒ 가업승계와 M&A 승계를 포괄하는 종합적 지원체계 확장 필요

참고 4

M&A지원센터 운영현황(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개요) M&A 수요발굴부터 자문, 중개, 금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 M&A거래정보망 구축·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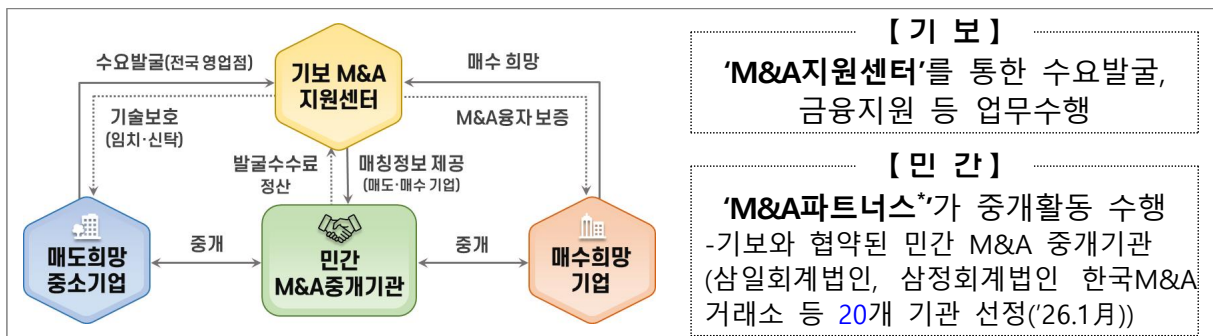
* *M&A 수요발굴, *정보제공, *중개위탁, *기술보호, *보증지원 등 업무수행

** (인프라) M&A지원센터 개소 및 M&A거래정보망 오픈('25.3~)

- (지원체계) M&A지원센터의 중개업무는 기술보증기금 등록 M&A 파트너스를 통해 민·관 협업체제로 진행

- (기보) M&A 수요기업 발굴 및 보증지원에 집중

- (민간) 수요기업에 대한 전문 중개·자문서비스 제공



□ M&A 파트너스

- 회계법인, 법무법인, 컨설팅사 등 20개사 ('26. 1월말)

기술보증기금 등록 M&A 파트너스(가나다 順)				
더블유엠디(주)	(주)딥서치	모멘스투자자문	법무법인 디엘지	(주)브릿지코드
삼덕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주)엠엔에이코리아	(주)엠애피
인터캐피탈 파트너스(주)	(주)제타플랜 인베스트먼트	(주)피봇브릿지	회계법인 대평	회계법인 숲
회계법인 아우름	(주)클로저나인티	프렉탈 테크놀로지(주)	(주)한국법인거래소	한국M&A거래소

- (운영실적) 수요 발굴 67건, 중개위탁 64건, 보증 12건('26.1월말)